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범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952

발의연월일: 2020. 12. 28.

발 의 자:서범수・김예지・김정재

박덕흠 • 박대수 • 이종배

최춘식 · 김희곤 · 구자근

윤주경 • 조수진 • 전봉민

김기현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은 건축물이 지진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,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할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 체의 장으로 하여금 건축을 허가하는 등의 경우에 내진(耐震)성능 확 보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음.

또한, 구조 안전의 확인 대상 건축물은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상응하는 내진(耐震)능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, 공관, 소방서, 발전소, 방송국 등은 모두 같은 중요도와 중요도계수로 구분됨.

그러나 발전소나 전자정부시스템 등을 운용하는 정부 전용 데이터 센터 등은 국민의 안전에 필수적인 중요시설로서 지진 등 각종 재난 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, 일반 공공청 사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내진(耐震)설계 등 구조 안전의 기준 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.

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발전소, 데이터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공공건축물에 대하여 내진(耐震)설계 등 구조 안전의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설정·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진으로부터 특수공공건축물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48조의4 신설 등).
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8조의4를 제48조의5로 하고, 제4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8조의4(특수공공건축물의 구조 안전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중요시설인 발전소, 데이터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공공건축물(이하 이 조에서 "특수공공건축물"이라 한다)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진(耐震)설계 등 구조 안전의 기준을 강화하여 설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특수공공건축물의 구조 안전 기준의 설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110조제9호의3 중 "제48조의4를"을 "제48조의5를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특수공공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적용례) 제48조의4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48조의4(특수공공건축물의 구
	조 안전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
	국가 중요시설인 발전소, 데이
	터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
	는 특수한 공공건축물(이하 이
	조에서 "특수공공건축물"이라
	한다)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
	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진
	(耐震)설계 등 구조 안전의 기
	준을 강화하여 설정·운영할 수
	있다.
	② 제1항에 따른 특수공공건축
	물의 구조 안전 기준의 설정·
	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
	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제48조의4(부속구조물의 설치 및	제48조의5(부속구조물의 설치 및
관리) (생 략)	관리) (현행 제48조의4와 같음)
제11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	제110조(벌칙)
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	
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	
벌금에 처한다.	
1. ~ 9의2. (생 략)	1. ~ 9의2. (현행과 같음)
9의3. <u>제48조의4를</u> 위반한 건축	9의3. <u>제48조의5를</u>

주, 설계자, 공사감리자, 공사	
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	
계전문기술자	
10. ~ 12. (생 략)	10. ~ 12. (현행과 같음)